#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(장경태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 호 5655

발의연월일: 2020. 11. 23.

발 의 자: 장경태·유정주·안민석

오영환 · 김영진 · 이소영

이용빈 · 신동근 · 홍성국

강득구 · 양정숙 · 문정복

정춘숙 · 김남국 · 이광재

의원(15인)

#### 제안이유

아파트 등 공동주택은 「공동주택관리법」에 의해 체계적으로 관리되고 있는 반면, 주상복합·상가·오피스텔 등 집합건물은 공적 관리기준이 미비하여 불투명하게 운영되고 있고 최근 주상복합·오피스텔 등 집합건물이 증가하고 규모가 대형화됨에 따라 거주민 간 혹은 당사자간 다양한 형태의 분쟁과 갈등이 발생하고 있음.

특히 「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」은 「공동주택관리법」과 달리 관리비 정보공개 및 지자체의 감독 등 관리업무에 대한세부사항 규정이 미흡하여 집합상가에서 관리비 관련 민원이 자주 발생하고 있음.

또한, 집합건물과 관련한 분쟁을 해결하기 위해 각 시·도에 '분쟁조 정위원회'를 설치해 관리비의 사용내역과 관련된 분쟁을 조정하도록 하고 있지만, 조정의 강제력이 없어 실효성이 없는 실정임.

이에 전유부분이 50개 이상인 건물의 거래행위에 관한 장부를 작성· 보관하도록 하며, 집합건물의 갈등 및 분쟁 조정을 위해 지방자치단체 의 장에게 분쟁 조정, 법률 위반 등의 사항에 대하여 조사 또는 감사 를 할 수 있도록 감독권을 부여하고, 분쟁조정위원회의 실효성을 높이 기 위해 소송진행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경우 분쟁조정에 응하도록 규정하여 집합건물 관리의 투명성을 높이고, 구분소유자 등 입주민의 권익을 보호하고자 함.

### 주요내용

- 가.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사 또는 감사 결과 관리인에게 부정한 행위나 그 밖에 그 직무를 수행하기에 적합하지 아니할 경우 관리인의 해임과 임시관리인의 선임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음(안 제24조제6항 신설).
- 나. 전유부분이 50개 이상인 건물의 관리인은 관리단의 사무집행을 위한 금원의 징수·보관·사용·관리 등 모든 관련 거래행위에 관하여 장부를 월별로 작성하여 그 증빙서류와 함께 해당 회계연도 종료일부터 5년간 보관하도록 함(안 제26조제2항).
- 다.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집합건물의 효율적인 관리와 주민의 복리증 진을 위하여 분쟁조정, 안전관리, 법률 위반을 비롯하여 감사에 필 요한 경우 관리위원회 또는 관리인에게 자료 제출이나 그 밖에 필

요한 명령을 할 수 있으며, 집합건물의 시설·장부·서류 등을 조사 또는 검사하게 할 수 있도록 함(안 제26조의5 신설).

- 라. 법무부장관은 집합건물 관리비리와 관련된 불법 행위 신고의 접수·처리 등에 관한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집합건물 관리비리 신고센터를 설치·운영할 수 있도록 함(안 제26조의6 신설).
- 마. 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신청에 대해 소송진행 등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7일 이내에 답변서를 조정위원회에 통지하고 조정에 응하여야함(안 제52조의5).

#### 법률 제 호

##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의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법률 제16919호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제24조제6항을 제7항으로 하고, 같은 조에 제6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- ⑥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26조의5(제52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)에 따른 조사 또는 감사 결과 관리인이 부정한 행위를 하였거나 그 밖에 그 직무를 수행하기에 적합하지 아니한 사유가 있을 경우 관리인의 해임과 임시관리인의 선임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. 제26조제1항 중 "구분소유자"를 "구분소유자(그의 승낙을 받아 전유부분을 점유하는 자를 포함한다)"로 하고, 같은 조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하며,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  - ② 전유부분이 50개 이상인 건물의 관리인은 관리단의 사무집행을 위한 금원의 징수·보관·사용·관리 등 모든 관련 거래행위에 관하여 장부를 월별로 작성하여 그 증빙서류와 함께 해당 회계연도 종료일 부터 5년간 보관하여야 한다. 이 경우 관리인은 「전자문서 및 전자 거래기본법」 제2조제2호에 따른 정보처리시스템을 통한 전자적 방

법으로 장부 또는 증빙서류를 작성하거나 보관할 수 있다.

- ③ 이해관계인은 관리인에게 제1항에 따른 보고자료나 제2항에 따른 장부 또는 증빙서류의 열람을 청구하거나 자기 비용으로 등본의 교부를 청구할 수 있다. 이 경우 관리인은 다음 각 호의 정보를 제외하고 이에 응하여야 한다.
- 1. 「개인정보 보호법」 제24조에 따른 고유식별정보 등 개인의 사 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는 정보
- 2. 의사결정 과정 또는 내부검토 과정에 있는 사항 등으로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정 보
- ④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장부 또는 증빙서류의 작성·보관·공개와 관련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 한다.

법률 제16919호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제26조의3제1항 중 "둘 수 있다"를 "두어야 한다"로 한다.

법률 제16919호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에 제26조의5 및 제26조의6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26조의5(집합건물관리에 관한 감독)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집합건물의 효율적인 관리와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전유부분이 50개 이상인 건물의 구분소유자, 관리인, 관리위원회 등에게 관리비등(제17조에 따른 관리비용과

공용부분에서 생기는 이익, 제17조의2제3항의 수선적립금과 그 밖에 해당 집합건물에서 발생하는 모든 수입에 따른 금전을 말한다)의 사용내역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자료의 제출이나 그 밖에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으며,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관리사무소 등에 출입하여 집합건물의 시설·장부·서류 등을 조사 또는 검사하게 할 수 있다. 이 경우 출입·검사 등을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나타내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.

- 1. 제3항 또는 제4항에 따른 감사에 필요한 경우
- 2.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을 위반하여 조치가 필요한 경우
- 3. 집합건물 내 분쟁의 조정이 필요한 경우
- 4. 집합건물 시설물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
- 5. 관리인 등이 집합건물 관리규약을 위반한 경우
- 6. 그 밖에 집합건물관리에 관한 감독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
- ② 집합건물의 구분소유자(그의 승낙을 받아 전유부분을 점유하는 자를 포함한다)는 제1항제2호, 제3호 또는 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전체 구분소유자의 10분의 3 이상의 동의를 받아 지방자치단체의장에게 관리위원회, 관리인 등의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요청할 수있다. 이 경우 감사 요청은 그 사유를 소명하고 이를 뒷받침할 수있는 자료를 첨부하여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.

-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2항에 따른 감사 요청이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감사를 실시한 후 감사를 요청한 구분소유자에 게 그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.
-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2항에 따른 감사 요청이 없더라도 집합 건물의 효율적인 관리와 주민복리 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 하는 경우에는 제2항의 감사 대상이 되는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 시할 수 있다.
- ⑤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3항 또는 제4항에 따라 감사를 실시할 경우 변호사·공인회계사 등의 전문가에게 자문하거나 해당 전문가와 함께 영업소·관리사무소 등을 조사할 수 있다.
- ⑥ 제2항부터 제5항까지의 감사 요청 및 감사 실시에 필요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.
-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명령, 조사 또는 검사, 감사의 결과 등을 통보하는 경우 그 내용을 해당 집합건물의 관리위원회 또는 관리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.
- ⑧ 관리위원회 또는 관리인은 제7항에 따라 통보받은 내용을 대통 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집합건물의 인터넷 홈페이지 및 해당 집합건물의 게시판에 공개하고 구분소유자의 열람, 복사 요구 에 따라야 한다.
- 제26조의6(집합건물 관리비리 신고센터의 설치 등) ① 법무부장관은 집합건물 관리비리와 관련된 불법 행위 신고의 접수·처리 등에 관한

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집합건물 관리비리 신고센터(이하 "신고센터"라 한다)를 설치·운영할 수 있다.

- ② 신고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.
- 1. 집합건물관리의 불법행위와 관련된 신고의 상담 및 접수
- 2.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해당 신고사항에 대한 조사 및 조치 요구
- 3. 신고인에게 조사 및 조치 결과의 요지 등 통보
- ③ 집합건물관리와 관련하여 불법행위를 인지한 자는 신고센터에 그 사실을 신고할 수 있다. 이 경우 신고를 하려는 자는 자신의 인적사항과 신고의 취지·이유·내용을 적고 서명한 문서와 함께 신고대상 및 증거 등을 제출하여야 한다.
- ④ 제2항제2호에 따른 요구를 받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신속하게 해당 요구에 따른 조사 및 조치를 완료하고 완료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그 결과를 법무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하며, 법무부장관은 통보를 받은 경우 즉시 신고자에게 그 결과의 요지를 알려야 한다.
-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신고센터의 설치·운영·업무·신고 및 처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
법률 제16919호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제52조 전단 중 "제26조의4까지"를 "제26조의6까지"로 한다.

제52조의5제2항 중 "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조정에 응할 것인지에 관한 의사를 조정위원회에 통지하여야 한다"를 "소송진행 등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7일 이내에 답변서를 조정위원회에 통지하고 조정에 응하여야 한다"로 한다.

법률 제16919호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제52조의8제1항 중 "제52조의5제2항에 따라 조정에 응하지 아니할 의사를 통지하거나 제52조의6제5항에"를 "제52조의6제5항에"로 한다.

법률 제16919호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제65조제2항을 제3항으로 하고,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다.

② 제26조의5제1항·제3항·제4항(제52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)에 따른 조사 또는 검사나 감사를 거부·방해 또는 기피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.

법률 제16919호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제66조제1항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제2호 및 제3호로 하고, 같은 항에 제1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, 같은 조 제2항제2호 및 제3호를 각각 제3호 및 제4호로 하고, 같은 항에 제2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, 같은 조 제3항제5호부터 제8호까지를 각각 제6호부터 제9호까지로 하고, 같은 항에 제5호 및 제10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- 1. 제26조제2항(제52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)을 위반하여 장부 및 증빙서류를 작성 또는 보관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작 성한 자
- 2. 제26조의5제8항(제52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)을 위반하

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부터 통보받은 명령, 조사 또는 검사, 감사 결과 등의 내용을 공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공개한 자 또는 열람, 복사 요구에 따르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따른 자

- 5. 제26조의5제1항에 따른 보고 또는 자료 제출 등의 명령을 위반한 자
- 10. 제52조의5제2항을 위반하여 특별한 사유 없이 분쟁조정에 응하지 아니한 자

#### 부 칙

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### 신·구조문대비표

혂 행 개 아 정 법률 제16919호 집합건물의 소유 법률 제16919호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 률 륨 제24조(관리인의 선임 등) ① ~ | 제24조(관리인의 선임 등) ① ~ ⑤ (생 략) ⑤ (현행과 같음) <신 설> ⑥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26 조의5(제52조에서 준용하는 경 우를 포함한다)에 따른 조사 또는 감사 결과 관리인이 부정 한 행위를 하였거나 그 밖에 그 직무를 수행하기에 적합하 지 아니한 사유가 있을 경우 관리인의 해임과 임시관리인의 선임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. ⑥ (생략) ⑦ (현행 제6항과 같음) 제26조(관리인의 보고의무 등) ① 제26조(관리인의 보고의무 등) ① 관리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년 1회 이상 구분 소유자에게 그 사무에 관한 보 소유자(그의 승낙을 받아 전유 고를 하여야 한다. 부분을 점유하는 자를 포함한 다)-----. ② 이해관계인은 관리인에게 ② 전유부분이 50개 이상인 건 물의 관리인은 관리단의 사무 제1항에 따른 보고 자료의 열

로 등본의 교부를 청구할 수 있다.

③ 이 법 또는 규약에서 규정 하지 아니한 관리인의 권리의 무에 관하여는 「민법」의 위 임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.

람을 청구하거나 자기 비용으 집행을 위한 금원의 징수·보관· 사용·관리 등 모든 관련 거래 행위에 관하여 장부를 월별로 작성하여 그 증빙서류와 함께 해당 회계연도 종료일부터 5년 간 보관하여야 한다. 이 경우 관리인은 「전자문서 및 전자 거래기본법 : 제2조제2호에 따 른 정보처리시스템을 통한 전 자적 방법으로 장부 또는 증빙 서류를 작성하거나 보관할 수 있다.

- ③ 이해관계인은 관리인에게 제1항에 따른 보고자료나 제2 항에 따른 장부 또는 증빙서류 의 열람을 청구하거나 자기 비 용으로 등본의 교부를 청구할 수 있다. 이 경우 관리인은 다 음 각 호의 정보를 제외하고 이에 응하여야 한다.
  - 1. 「개인정보 보호법」 제24조 에 따른 고유식별정보 등 개 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 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는 정 보
- 2. 의사결정 과정 또는 내부검

<신 설>

법률 제16919호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 륨

제26조의3(관리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) ① 관리단에는 규약으로 기능) ① ------정하는 바에 따라 관리위원회 를 둘 수 있다.

②·③ (생 략)

법률 제16919호 집합건물의 소유 법률 제16919호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 륨

<신 설>

토 과정에 있는 사항 등으로 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 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 래할 우려가 있는 정보

④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장 부 또는 증빙서류의 작성·보관· 공개와 관련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.

|법률 제16919호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 률

| 제26조의3(관리위워회의 설치 및

---두어야 한다.

②·③ (현행과 같음)

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 륨

제26조의5(집합건물관리에 관한 감독)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집합건물의 효율적인 관리와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다 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경우 전유부분이 50개 이

상인 건물의 구분소유자, 관리 인, 관리위원회 등에게 관리비 등(제17조의 관리비용과 공용 부분에서 생기는 이익, 제17조 의2제3항의 수선적립금과 그 밖에 해당 집합건물에서 발생 하는 모든 수입에 따른 금전을 말한다)의 사용내역 등 대통령 령으로 정하는 업무에 관한 사 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자료의 제출이나 그 밖에 필요한 명령 을 할 수 있으며, 소속 공무원 으로 하여금 관리사무소 등에 출입하여 집합건물의 시설·장 부·서류 등을 조사 또는 검사 하게 할 수 있다. 이 경우 출 입·검사 등을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나타내는 증표를 지 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 야 한다.

- 1. 제3항 또는 제4항에 따른 감 사에 필요한 경우
- 2.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을 위반하여 조치가 필요한 경우
- 3. 집합건물 내 분쟁의 조정이

필요한 경우

- 4. 집합건물 시설물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
- 5. 관리인 등이 집합건물 관리 규약을 위반한 경우
- 6. 그 밖에 집합건물관리에 관한 감독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
- ② 집합건물의 구분소유자(그의 승낙을 받아 전유부분을 점유하는 자를 포함한다)는 제1항제2호, 제3호 또는 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 전체 구분소유자의 10분의 3 이상의 동의를 받아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관리위원회, 관리인 등의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요청할 수있다. 이 경우 감사 요청은 그사유를 소명하고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여서면으로 하여야 한다.
-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2항 에 따른 감사 요청이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감 사를 실시한 후 감사를 요청한 구분소유자에게 그 결과를 통

보하여야 한다.

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2항 에 따른 감사 요청이 없더라도 집합건물의 효율적인 관리와 주민복리 증진을 위하여 필요 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2 항의 감사 대상이 되는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할 수 있다. ⑤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3항 또는 제4항에 따라 감사를 실 시할 경우 변호사·공인회계사 등의 전문가에게 자문하거나 해당 전문가와 함께 영업소·관 리사무소 등을 조사할 수 있다. ⑥ 제2항부터 제5항까지의 감 사 요청 및 감사 실시에 필요 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조 례로 정한다.

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라명령, 조사 또는 검사, 감사의결과 등을 통보하는 경우 그내용을 해당 집합건물의 관리위원회 또는 관리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.

⑧ 관리위원회 또는 관리인은

법률 제16919호 집합건물의 소유 법률 제16919호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 륨

<신 설>

제7항에 따라 통보받은 내용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 라 해당 집합건물의 인터넷 홈 페이지 및 해당 집합건물의 게 시판에 공개하고 구분소유자의 열람, 복사 요구에 따라야 한 다.

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 륨

제26조의6(집합건물 관리비리 신 고센터의 설치 등) ① 법무부 장관은 집합건물 관리비리와 관련된 불법 행위 신고의 접 수·처리 등에 관한 업무를 효 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집 합건물 관리비리 신고센터(이 하 "신고센터"라 한다)를 설치. 운영할 수 있다.

- ② 신고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.
- 1. 집합건물관리의 불법행위와 관련된 신고의 상담 및 접수
- 2.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해당 신고사항에 대한 조사 및 조치 요구

- 3. 신고인에게 조사 및 조치 결 과의 요지 등 통보
- ③ 집합건물관리와 관련하여 불법행위를 인지한 자는 신고 센터에 그 사실을 신고할 수 있다. 이 경우 신고를 하려는 자는 자신의 인적사항과 신고 의 취지·이유·내용을 적고 서명 한 문서와 함께 신고 대상 및 증거 등을 제출하여야 한다.
- ④ 제2항제2호에 따른 요구를 받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신 속하게 해당 요구에 따른 조사 및 조치를 완료하고 완료한 날 부터 10일 이내에 그 결과를 법무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하 며, 법무부장관은 통보를 받은 경우 즉시 신고자에게 그 결과 의 요지를 알려야 한다.
-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신고센터의 설치·운영·업무·신고 및 처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 으로 정한다.

법률 제16919호 집합건물의 소유 법률 제16919호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

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

륨

제52조(단지에 대한 준용) 제51조의 경우에는 제3조, 제23조의2, 제24조, 제24조의2, 제25조, 제26조의2부터 제26조의4까지, 제27조부터 제42조까지 및 제42조의2를 준용한다. 이경우 전유부분이 없는 건물은해당 건물의 수를 전유부분의수로한다.

제52조의5(분쟁조정신청과 통지 등) ① (생 략)

② 제1항에 따라 통지를 받은 상대방은 그 통지를 받은 날부 더 7일 이내에 조정에 응할 것인지에 관한 의사를 조정위원회에 통지하여야 한다.

#### ③ (생략)

법률 제16919호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 률

제52조의8(조정의 중지 등) ① 조 정위원회는 당사자가 <u>제52조의</u> 5제2항에 따라 조정에 응하지 아니할 의사를 통지하거나 제5 2조의6제5항에 따라 조정안을

륟
제52조(단지에 대한 준용)
<u>제26</u>
조의6까지
제52조의5(분쟁조정신청과 통지
등) ① (현행과 같음)
②
소송진행 등 특별한
사정이 없으면 7일 이내에 답변
서를 조정위원회에 통지하고 조
정에 응하여야 한다.
③ (현행과 같음)
법률 제16919호 집합건물의 소유
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
를
제52조의8(조정의 중지 등) ①
제52조의
<u> 6제5항에</u>

거부한 경우에는 조정을 중지 하고 그 사실을 상대방에게 서 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.

### ②·③ (생 략)

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 륲

제65조(벌금) ① (생략)

<신 설>

② (생 략)

제66조(과태료) ① 다음 각 호의 제66조(과태료) ① ------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.

<신 설>

1. • 2. (생략)

②・③ (현행과 같음)

법률 제16919호 집합건물의 소유 법률 제16919호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 튬

제65조(벌금) ① (현행과 같음)

- ② 제26조의5제1항·제3항·제4항 (제52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)에 따른 조사 또는 검사나 감사를 거부·방해 또는 기피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 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에 처한다.
- ③ (현행 제2항과 같음)

- 1. 제26조제2항(제52조에서 준 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)을 위반하여 장부 및 증빙서류를 작성 또는 보관하지 아니하거 <u>나 거짓으로 작성한</u> 자
- 2. 3. (현행 제1호 및 제2호와

-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00만원 이 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.
- 1. (생략)

<신 설>

## 2. · 3. (생략)

-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.
- 1. ~ 4. (생 략) <신 설>
- 5. ~ 8. (생략)

<신 설>

같	음	.)	
_	$\vdash$	/	

- 2 -----
  - 1. (현행과 같음)
  - 2. 제26조의5제8항(제52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)을 위반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부터 통보받은 명령, 조사 또는 검사, 감사 결과 등의 내용을 공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공개한 자 또는 열람, 복사 요구에 따르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따른 자
  - 3.·4. (현행 제2호 및 제3호와 같음)
- 3 -----
- 1. ~ 4. (현행과 같음)
- 5. 제26조의5제1항에 따른 보고또는 자료 제출 등의 명령을위반한 자
- 6. ~ 9. (현행 제5호부터 제8 호까지와 같음)
- 10. 제52조의5제2항을 위반하여

	특별한 사유 없이 분쟁조정에
	응하지 아니한 자
④ (생 략)	④ (현행과 같음)